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6

제안연월일 : 2026. 10.
제 안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2024년부터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를 위탁 수행해 온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와의 계약 기간이 2026. 12. 31. 만료 예정이므로 답례품 공급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재계약 하고자 함.

○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4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공급업체 사무 민간 위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4조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 추진 필요성

-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024년부터 총 9,266건, 279,721천원의 답례품 공급을 전담하며 기부자들에게 빠

르고 안전한 답례품 배송과 반품 등 사후관리를 수행하여 기부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계절별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연계·발굴함.

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

○ 고향사랑e음 제품 등록 및 상세이미지 관리
○ 답례품 품질 및 유통상태 모니터링 정상 배송 확인
○ 품질 및 배송 민원 처리
○ 답례품 수거·배송, 개별업체 교육
○ 답례품 대금 및 택배비용 청구
○ 로컬푸드 계절별 답례품 발굴·공급
○ 민간플랫폼 답례품 공급 사무 수행(신규 위탁사무)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기 관 명: (재)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임성원)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 운영인력: 임성원 이사장 외 30명
○ 시설위치: 용평면 경강로 2220
○ 시설규모: 로컬푸드 직매장(1호점) 49㎡ 외 4개 매장, 학교급식센터 등
○ 정　　원: 일반직 21명, 실무직 22명(현원 30명)

마. 민간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제8조 준용, 공개모집 의무)

○ 기존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56,000천원(재단 8급 8호봉 기준)

- 인건비: 3,457,800원 × 12개월 × 1명 ≒ 41,493천원
- 퇴직급여(사용자부담): 300천원 × 12개월 × 1명 = 3,600천원
- 국내여비: 2,000천원
- 직무수행경비: 175천원 × 12개월 × 1명 = 2,100천원
- 연금부담금: 5,189천원

※ 2024. 1. 1. ~ 2026. 12. 31. 민간위탁금 132,000천원(연간 44,000천원)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제4조의2)

○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직영 사무 방식의 경우 개별업체 교육·관리 및 품질배송 민원 처리 등으로 지속 확대에 한계 있음.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 농특산물 답례품의 품질, 배송 등 유통 전문 공급업체에서 다수의 개별업체 관리의 경우 안정성 및 경제적 효율성 확보됨

○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농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경험과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답례품 제품정보, 배송 상황, 제품 공급 상황 등 수시 모니터링으로 성과 측정 용이함.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답례품의 신속한 공급 여부 수시 모니터링, 신규 개별업체 교육, 배송비의 신속한 청구, 고향사랑e음 제품정보 수시 업데이트 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높음.

○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 공급업체와 참여업체가 같은 경우, 답례품의 신속·정확한 배송 체계를 관리, 품질 및 배송오류에 대한 민원처리 등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전자상거래 경험이 없는 개별업체 교육에 한계 있을 수 있음.

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

○ 종합성과평가 결과 '87점'으로 평가됨

- 세정과-13914(2026. 9. 23.)호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 위탁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검토보고'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 위수탁을 통해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는 평창군 답례품을 널리 알리고 기부자들에게 빠르고 안전한 답례품 배송을 통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 계절에 따라 꾸러미 제품들을 개발하고, 지역 농가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인기상품인 평창사과와 사과대추, 산양삼, 잡곡세트, 참송이버섯 등 다양한 농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였고, 이 결과 위탁기간 동안 9,266건, 279,721천원의 답례품 공급 실적을 달성하였음. 따라서, 안정적 물류관리와 지역 농가 연계를 통해 제도 홍보 및 사업 확대에 기여한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재계약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차.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운영현황

-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24. 1. 1. ~ 26. 12. 31. (3년간)
- 2024년 공급실적: 3,841건 / 117,073천원
- 2025년 공급실적: 3,803건 / 113,223천원
- 2026년 1월 ~ 8월 공급실적: 1,622건 / 49,425천원

【관련자료】

□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평창군 답례품 공급 운영 계약(협약)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 위·수탁 계약(협약)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운영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재단법인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공급업체'라 한다)간 다음과 같이 공급업체 사무 위·수탁 계약(협약)을 체결한다.

제1절 계약의 목적 및 체결

제1조(목적) ① 본 계약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군'과 '공급업체' 간에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본 계약은 '답례품' 공급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는 계약이며,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의사(주문)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이하 '고향사랑e음'이라 한다)을 통해 '공급업체'에 도달한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답례품'이라 함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군내 지역특산품, 물품 등으로 '군'이 '평창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답례품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것을 말한다.

② '기부자'라 함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을 평창군에 기부한 자를 말한다.

제4조(계약 당사자의 역할) 본 계약의 당사자인 '군'과 '공급업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군': 계약이행 관리·감독, '답례품' 공급실적 확인, '답례품' 공급대금 지급, '답례품' 배송비용 지원.
2. '공급업체': '답례품'의 유통·포장·공급 등 계약이행, '답례품' 품질·위생관리 수준 모니터링, 답례품 불량·변질 등 하자에 대한 책임, 제품에 대한 민원 처리, 기타 답례품 공급·운영을 위한 '군'의 관리·감독에 대한 준수,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공급업체' 업무의 범위) '군'의 관리·감독하에 '공급업체'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이 선정한 '답례품'을 공급한다. '공급업체'가 공급하는 답례품은 별지와 같다.

□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 위탁'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추진 계획

(세정과-14150, 2026. 9. 30.)

저장 : 김경은 / 세정과 (2026-09-30 16:39:45)

등록번호	세정과-14150
등록일자	2026. 9. 30.
결재일자	2026. 9. 30.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주무관	세정팀장	세정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군수	군수
김경은	김진범	전재준	권혁영	임성원	2026. 9. 30. 심재국
협조자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 위탁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추진 계획

[개 요]

- ❍ 위탁사무 :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위탁
- ❍ 위탁기관 :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 ❍ 심사방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평가 후 재계약

※기존 위탁(24.1.~26.12.) 성과평가 결과 87점(우수)로 재계약 추진 적정

평 창 군
(세 정 과)

관계법령 발췌

□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4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답례품 정보 ‘고향사랑e음’ 등록, 주문 · 결재 · 배송 · 관리, 생산자 교육, 답례품 품질 및 배송에 대한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